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8. 12. 21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8. 12. 21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4차 위원회(1998. 12. 2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가. 제안이유

-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심화되고 있는 주차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상 문 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 주차요금의 하향조정으로 공영주차장 이용율을 제고하여 기존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 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공영주차장 이용자 권익 보호(안 제7조제3항)

정기주차 차량이 주차장 관리자의 사정으로 주차장의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는 물론 차량의 도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도 이미 징 수한 주차요금을 관리자가 반환토록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하향 조정(안 별표1)

- 일일주차권(노외주차장) : 1급지 10,000원 → 8,000원
- 월정기권(노상주차장) : 3급지 60,000원 → 3급지 50,000원
- 월정기권(노외주차장)

1급지 120,000원, 2급지 80,000원, 3급지 50,000원

→ 1급지 90,000원, 2급지 60,000원, 3급지 40,000원

- 공영주차장 이용시간 탄력적 운영 (안 별표1 제1호라목)

• 현행

하절기(4월~10월) : 08 : 00~20 : 00, 동절기(11월~3월) : 09 : 00~19 : 00

• 개정

주간 : 08 : 00~20 : 00, 야간 : 20 : 00초과~익일 08 : 00미만까지

※ 지역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 주차장 운영방법 개선(안 별표1의 제1호사목)

- 노상주차장 주변의 월정기권을 필요로 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주변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일주차 및 월정기주차권 허용
- 노외주차장의 경우 관제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유료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환승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이 저렴하게 조정되는 바, 이용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정기권을 신청한 이용자가 일요일 및 공휴일도 우선 주차토록 하기 위해 일요일 및 공휴일도 유료로 운영하고자 함

○ 주차요금의 조정 방안 신설(안 별표1의 제1호아목)

- 주택가 노상주차장은 주민들의 주차권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노상주차장 3급지 요금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시행이 어려워 주택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이 주차요금의 50%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토록 하여 적절한 요금을 징수토록 하기 위함

○ 시 주관 행사차량 요금 감면 조항 신설(안 별표1의 제1호자목)

-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하여 시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각종 행사시 필요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하여 원활한 행사를 개최토록 하기 위함

○ 환승주차장 요금 조정(안 별표1의 제1호차목)

- 월정기권 : 주간 50,000원, 야간 30,000원 → 주간 30,000원, 야간 20,000원
※ 주· 야간 모두 이용시 40,000원

○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대상의 확대 및 감면요율 조정(안 별표1의 제3호)

- 장애인 및 상이자의 대리운전차량, 함께타기 실천차량, 노외주차장에 인접한 주민의 차량에 대한 요금 감면 항목과 모범납세자에 대한 면제 항목을 신설
- 요금감면 대상자의 감면요율은 타시의 10부제 운행 실천차량의 감면요율을 고려하여 부제 운행 실천차량의 감면요율은 20% 범위 내로 개정하고 장애인, 상이자 및 소형자동차에 대하여는 현행과 동일하게 50% 감면혜택 부여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p>○ 현재 부천시의 차량과 주차면수 현황은?</p> <p>○ 월 정기권 요금을 인하하는 이유는?</p>	<p>○ 차량은 163,558대, 주차면은 108,082면임.</p> <p>○ 공영주차장 이용율을 제고하고 기존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p>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p>○ 시 주관 행사차량과 노외주차장에 접하여 거주하는 주민의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기준은 애매 모호하지 않은가?</p> <p>○ 환승주차장 현황은?</p> <p>○ 거주자 우선주차제 추진 현황은?</p>	<p>○ 객관성을 띤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겠음</p> <p>○ 송내 남부, 북부역과 소사 남부역 등 3개소가 있음.</p> <p>○ 조례는 마련되어 있으나 주민들의 주차권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어 노상주차장 3급지 요금의 5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고자 함.</p>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수정안의 요지

○ "별첨"참조

6.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제 97 호
의결년월일	98. 12. 26 (제67회)

제출년월일 : 1998. 12. 23

제 출 자 : 건설교통위원장

□ 수정이유

- 자가용 승용차의 도심유입 감소를 통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환승주차장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주차요금 인하는 다소 타당하나 주택가 노상주차장에 대한 거주지 주민에 대한 배려 미흡과 노외주차장에 접하여 거주하는 주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객관적 기준 별도 마련 필요

□ 주요골자

- 환승주차장과 관련한 안 제6조제1항 별표1 중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안 제6조제1항 별표의 비교란 중 제1호 라목, 차목, 제2호 본문 및 다목을 제외한 내용은 종전 조례대로 시행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6조제1항 별표의 비교란 중 제1호 사목 내지 자목을 삭제하고 동호 차목을 아목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별표의 비교란 중 제2호 본문을 삭제한다.

안 제6조제1항 별표의 비교란 중 제3호를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②(생략)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②(생략)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②(현행제1항내지 제2항과 같음)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②(개정안과 같음)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②(개정안과 같음)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②(개정안과 같음)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②(개정안과 같음)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②(개정안과 같음)
③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요금은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관리자 사정으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 요금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③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요금은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관리자 사정으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 요금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③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한 경우로서 주차장 사용의 중지·폐지 등 관리자의 귀책 또는 이용자에게 책임을 들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한 경우로서 주차장 사용의 중지·폐지 등 관리자의 귀책 또는 이용자에게 책임을 들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한 경우로서 주차장 사용의 중지·폐지 등 관리자의 귀책 또는 이용자에게 책임을 들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한 경우로서 주차장 사용의 중지·폐지 등 관리자의 귀책 또는 이용자에게 책임을 들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한 경우로서 주차장 사용의 중지·폐지 등 관리자의 귀책 또는 이용자에게 책임을 들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한 경우로서 주차장 사용의 중지·폐지 등 관리자의 귀책 또는 이용자에게 책임을 들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2 (생략)	1~2 (생략)	1~2 (현행제1호 내지 제2호와 같음)	1~2 (현행제1호 내지 제2호와 같음)	1~2 (현행제1호 내지 제2호와 같음)	1~2 (현행제1호 내지 제2호와 같음)	1~2 (현행제1호 내지 제2호와 같음)	1~2 (현행제1호 내지 제2호와 같음)
(별표 1)	(별표 1)	(별표 1)	(별표 1)	(별표 1)	(별표 1)	(별표 1)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단위 : 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단위 : 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단위 : 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단위 : 원)	
구분	급지	1회 주차		일 일 주차권	월정기권		
		1구획 최초 30분	1구획 10분 마다		주간	야간	
노상	1급지	400	200				
	2급지	300	100				
	3급지	300	100	4,000	60,000	40,000	
노외	1급지	400	200	10,000	120,000	60,000	
	2급지	300	100	6,000	80,000	40,000	
	3급지	300	100	4,000	50,000	30,000	
구분	급지	1회 주차		일 일 주차권	월정기권		
		1구획 최초 30분	1구획 10분 마다		주간	야간	
노상	1급지	---	---				
	2급지	---	---				
	3급지	---	---	---	50,000	---	
노외	1급지	---	---	8,000	90,000	---	
	2급지	---	---	---	60,000	---	
	3급지	---	---	---	40,000	---	

현행	개정안	수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1. 주차요금 부과기준 가~다 (생략)</p> <p>라. <u>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하며 이용시간은 따로 정하여 당해 주차장에 게시한다.</u></p> <p>1) <u>하절기(4월-10월) : 08:00~20:00</u></p> <p>2) <u>동절기(11월-3월) : 09:00~19:00</u></p> <p>마~바 (생략)</p> <p>사. 주차요금의 요율</p> <p>1) <u>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장의 이용율을 극대화하고 장기주차 억제를 위하여 일일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은 운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주지를 우선하여 주차차량을 지정 운영하는 3급지는 예외로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1. 주차요금의 부과기준 가~다 (현행 가목 내지 다목과 같음)</p> <p>라. <u>주차장 운영에 따른 적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야간 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u></p> <p>1) <u>주간 : 08:00~20:00</u></p> <p>2) <u>야간 : 20:00초과~익일 08:00미만까지</u></p> <p>마~바 (현행 마목 내지 바목과 같음)</p> <p>사. 주차요금의 요율</p> <p>1) <u>노상주차장 1.2급지의 경우 주차장의 이용율을 극대화하고 장기주차 억제를 위하여 일일주차권 및 월정기 주차권은 운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정기권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일주차권의 주차요금은 당해 급지 노외 주차장 주차요금의 1.2배로 하고 월정기권의 주차요금은 1.8배로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1. 주차요금의 부과기준 가~다 (개정안과 같음)</p> <p>라. (개정안과 같음)</p> <p>마~바 (개정안과 같음)</p> <p>사. 주차요금의 요율</p> <p>1)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2)일요일 및 공휴일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주차수요가 대폭 증가되는 지역의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p>	<p>2)일요일 및 공휴일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p>	<p>2)(현행과 같음)</p>
<p>(신설)</p>	<p>아. 주차요금의 조정</p> <p>시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p>	<p>(삭제)</p>
<p>(신설)</p>	<p>자. 관용차량, 시 주관 행사차량, 기타 시장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p>	<p>(삭제)</p>
<p>(신설)</p>	<p>차. 환승주차장</p> <p>1)환승주차장의 지정 및 운영방법은 시장이 정한다.</p> <p>2)환승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 3급지 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환승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에 한하여 월정기권의 주차요금은 주간 30,000원, 야간 20,000원으로</p>	<p>아. (개정안과 같음)</p> <p>1)(개정안과 같음)</p> <p>2)(개정안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2.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다만, 2개 이상의 주차장이 걸쳐있는 경우 상위급지로 적용한다.)</p> <p>가~나 (생략)</p> <p>다. 3급지 : 주거지역의 노상·노외 주차장, 녹지지역 주차장, 시장이 지정한 환승주차장 및 시장이 특별히 인정한 지역</p> <p>라. (생략)</p> <p>3.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감면</p> <p>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한 장애인수첩, 장애인증명 또는 국가유공자증서를 제시한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p> <p>나. 국가유공자예관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동법시행령 제101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p>	<p>하며, 이용자가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정기권은 40,000원으로 한다.</p> <p>2.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1개의 주차장이 2개 이상의 급지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위 급지를 적용한다.</p> <p>가~나 (현행 가목 내지 나목 같음)</p> <p>다. 3급지 : 주거지역, 녹지지역의 노상·노외 주차장,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주차장</p> <p>라. (현행과 같음)</p> <p>3.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감면</p> <p>가.</p> <p>.....장애인수첩 및 장애인증명서를 소지한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장애인이 동승한 대리운전차량 포함)에 대하여는.....</p> <p>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p> <p>.....</p> <p>.....</p> <p>.....</p>	<p>2. (현행과 같음)</p> <p>가~나 (개정안과 같음)</p> <p>다. (개정안과 같음)</p> <p>라. (개정안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u>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u></p> <p>다. 자가용 승용차로서 <u>차량10부제 운행 실천차량으로</u> 지방자치단체장이 발부한 증명을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u>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u></p> <p>라. (생략) (신설)</p> <p>(신설)</p>	<p><u>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차량 (상이자가 동등한 대리운전차량 포함)에 대하여는 ……</u></p> <p>다. ……<u>차량부제운행 및 함께타기 실천차량으로 ……</u> <u>……주차요금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경감한다.</u></p> <p>라. (현행과 같음)</p> <p>마. <u>주거지역, 녹지지역에 위치한 노의주차장에 접하여 거주하는 주민의 차량에 대하여는 당해 주차장의 이용시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u></p> <p>바. <u>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u></p>	<p>다. (현행과 같음)</p> <p>라. (개정안과 같음) (삭제)</p> <p>(삭제)</p>